

노인인권보호 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개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노인요양원에서의 인권은 입소한 어르신들께서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약해지셨다 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삶 전체를 규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와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적 규제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학대 예방이 인권보호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노인권리보호

노인권리보호는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지침과 법률적 처벌로 이뤄집니다. 윤리적 지침은 법률적 규제보다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권리를 보여주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입소자 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¹⁾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¹⁾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06 년 5 월 23 일 간)과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년 11 월 간)에서 인용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유형의 법률적 정의

노인복지법 1 조 2 의 4 에 규정된 학대행위는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의 8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인 항목들을 정리하면 7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²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²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2013 년 보건복지부 배포)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에 대한 법률적 처벌

노인복지법 39 조의 9 와 55 조의 2, 3, 4 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처벌
상해(상처, 부상, 장애 등)를 입혔을 경우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했을 때(부상에 상관없이 공격행위 전체 포함)	5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 5 백만원 이하 벌금
유기, 방임한 경우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한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폭언, 협박, 위협)	
노인을 위해 증여/지급된 금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예방 및 발생시 대응 조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

인권선언과 권리보호 선언에 부합한 서비스는 원칙도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례별 판단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외워서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기억한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원하시는 바를 최우선으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병이 진행되면서 욕구가 단순해집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할 정도로 치매가 진행된 어르신이 원내의 작은 사회에서 권력획득을 위한 복잡한 정치적 행동을 하신다거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치매 초기 혹은 인지는 거의 정상인 어르신이라 해도 노화로 인해 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욕구의 성격이 단순화된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일 – 예컨대 해외 여행을 다녀오게 해달라거나, 수시로 본인이 지정하는 반찬으로 별도 조리해달라거나,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께서 혼자 걷고 가족에게 가서 아기를 돌보겠다고 하시거나, 요양보호사를 지정하여 일인 간병으로 배치해달라 같은 요구사항 – 은 능력 밖임을 정중히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 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해드리면 됩니다. 욕구의 구조가 단순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하시는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한 형태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식사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하고, 하루 몇 번 거실로 나오고, 기저귀에 일을 보면 바로 교체하고, 정원 등에 잠시라도 나가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허락하지 않을 때 학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업무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어르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가축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공장식 축산입니다. 몸조차 돌릴 수 없는 공간에 감금하고 오물도 최소한으로만 처리하면서 항생제와 소독제로 감염을 통제하면서 인공사료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한까지 추구하면 이런 공장식 축산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침대들이 닭장처럼 붙어서 큰 방에 수십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으면서 소변줄과 소독약과 항생제로 감염을 통제하고 식사케어를 하기 보다는 콧줄이나 수액으로 영양을 관리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극한의 업무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어르신을 고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편의와 효율을 조금씩만 더 추구해도 가족에게도 잔인하다고 평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로 어르신을 대할 때 긍정적인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치매어르신의 행동심리증세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노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악성 소비자를 대할 때 선의로 대한다고 해서 선의의 반응이 되돌아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매 어르신에게는 어르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선의로 대하면 어르신 역시 안정된 삶과 태도로 보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겉으로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약한 입장의 어르신께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정신과 약이나 구속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많은 치매어르신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치매어르신들의 행동심리증세 중 적지 않은 부분들이 불안감과 공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주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위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고 공격하게 되고 본인에게 익숙한 곳을 찾아 배회하게 되고 오물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변을 만지고 소변을 엉뚱한 곳에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치매 어르신이라 해도 안정됩니다. 이는 우리 요양원에서도 여러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노인학대의 조짐일 수 있는 행위를 보면 즉시 동료에게 조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해주세요.

노인학대는 아니지만 노인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 학대는 아니지만 어르신께 다소 거친 표현을 쓰거나 반말을 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런 행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상급자에게도 알려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인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으로 어르신께 반말하는 경우
- 어르신을 이동시킬 때 다소 거칠게 이동시키는 경우
- 어르신이 요청하는 사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거절하는 경우
- 어르신과 말다툼하는 경우
- 어르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시 대응조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치료/훈련/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대의무자는 학대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들은 노인학대 여부, 긴급구조 필요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후 학대로 결론을 내릴 경우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곳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